

## [ 연말정산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 중 소급적용분 ]

다음 내용은 2025.1.16. 자로 보도된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연말정산 관련 개정분 중 2024년 소급적용 해당 내용입니다. 시행령은 2월경 공포될 것이나 다음 의 내용은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.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(소득령 §17의2 신설)

< 법 개정내용(소득법 §12(3)머) >	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</li> <li>○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개인사업자)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</li> <li>○ (법인)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*(친족관계(국기법 §2)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)</li> </ul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법인령 §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</p>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출산지원금 지급횟수 적용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: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</li> <li>○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: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 적용 (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)</li> </ul>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

2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(소득령 §112  
④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적용대상) 무주택자</li> <li>○ (공제율)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%</li> <li>○ (공제한도) 연 400만원</li> <li>○ (임차주택)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</li> <li>○ (공제요건) ①·②·③ 모두 충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은행, 상호저축은행, 보험회사, 및 주택금융공사등*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</li> <li>*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주택도시기금, 여신전문금융회사, 지방보훈청</li> <li>② 입주일·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li>③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</li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추 가&gt;</p> 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환대출시에도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경우,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(좌 동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어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</p>

<개정이유>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

<적용시기>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.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(조특령 §94)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92) >

- '26.12.31.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1인당 50만원 세액공제
  -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가산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
  - 신청절차,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가산세)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면제</li> <li>○ (이자상당액) 50만원 × ① ×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</li> <li>② 「국기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자율 (1일 0.022%)</li> </ul> </li> </ul>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제출서류) 혼인관계증명서</li> <li>○ (신청절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</li> <li>②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

<적용시기> '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